|  |  |  |
| --- | --- | --- |
| **국가세무총국의 수출 환급 진도 가속화 유관사항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8년 제48호  국무원의 수출 퇴세(번역자 주: 환급) 진도 가속화에 관한 결정을 철저히 관철시켜 실행하기 위한 유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수출 퇴(면)세 기업 분류 관리 최적화  1.1 수출 기업 관리 유형별 평가 기준 조정  1.1.1 1류 생산기업 평가 기준 중 “전년도 연말 순자산이 전년도 해당 기업이 처 리한 수출퇴세액(면제•공제세액 불포함)보다 크다.”를 “전년도 연말 순자산이 전년도 해당 기업이 처리한 수출퇴세액(공제•면제세액 불포함)의 60%보다 크다.”로 조정한다.  1.1.2 3류 수출 기업 평가 기준 중 “전년도 누적 6개월 이상 수출 퇴(면)세 신고를 하지 않음(대외 원조, 대외 도급, 경외 투자업무에 종사할 경우, 또한 계절성 상품 수출 또는 수출 생산주기가 비교적 긴 대형 설비의 수출 기업 제외)”의 평가 조건을 폐지한다.  1.2 관리 유형 연도 평가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수출 기업과 관련된 상황이 발생하여 관리 유형 조정을 변경 및 신청할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유관 규정에 따라 적시에 평가 업무를 전개하여야 한다.  1.3 평가 기준 조정 후, 1류 수출 기업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생산기업은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그 관리 유형을 변경 신청한다. 세무기관은 기업자료 수리(受理)일로부터 15 업무일 내 평가 조정 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평가 기준 조정 후, 2류 수출 기업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에 대해 세무기관은 15 업무일 내 평가 조정 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2. 무서류 퇴세 신고 전면 시행  2.1 무서류 퇴세 신고 지역 전면 보급을 실현한다. 각 지역 세무기관은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신고, 증명 처리, 승인, 국고 환급 등 수출 퇴(면)세 업무 “온라인 처리”를 실현하고, 수출 기업이 퇴세를 처리하는데 확실한 편의를 주고, 퇴세 효율을 제고하여야 한다. 2018년 12월 31일 전, 전국에 무서류 퇴세 신고를 널리 실현한다.  2.2 무서류 퇴세 신고 1류, 2류 수출 기업 전면 보급을 실현한다. 기업의 자발적 원칙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 전, 수출 퇴(면)세 관리 유형이 1류, 2류인 수출 기업이 무서류 퇴세 신고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도록 실현시킨다.  3. 대외무역 신경영 방식 발전 대규모 지지  3.1 대외무역 종합 서비스 기업이 중소기업을 위해 퇴세 처리 대행을 하도록 장려한다. 각 지역 세무기관은 대외무역 종합 서비스 기업 퇴세 관리 관련 규정을 철저히 실행에 옮겨 대외무역 종합 서비스 기업과 생산기업의 비안, 실질조사, 퇴세 세금계산서 발급 대행, 퇴세 정보 전달 등 업무를 수행하고, 대외무역 신경영 방식 발전을 지지하여야 한다.  3.2 대외무역 종합 서비스 기업에게 업무 리스크 예방을 지도한다. 주관세무기관은 기업 수요에 근거하여 대외무역 종합 서비스 기업에게 내부 리스크 관리 통제 제도 마련, 내부 리스크 관리 통제 정보 시스템 구축, 퇴세 업무 처리 대행 리스크 예방을 지도한다.  4. 적극적 수출 퇴(면)세 서비스 수행  4.1 각급 세무기관은 언론매체, 홈페이지, SMS 플랫폼, 이메일, 위챗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책 홍보와 업무 교육을 전개하여 수출 기업이 적시에 편리하게 서류를 수집하고, 퇴세 신고 조건에 최대한 빨리 만족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4.2 각급 세무기관은 수출 기업이 적시에 편리하게 수출 퇴세 전액을 수령하도록 정기적으로 수출 기업에게 퇴(면)세 신고, 심사, 국고 환급 진도 및 퇴(면)세 신고 기한 등 상황을 알려주어야 한다.  5. 시행일자  본 공고는 발표일로부터 시행한다. <수출 퇴(면)세 기업 분류 관리 방법>(국가세무총국 공고 2016년 제46호 발표) 제5조 제1항 제3목, 제6조 제3항, 제9조 “수출 기업 관리 분류 평가 업무는 매년 1회 진행하고, 기업 납세 신용등급 평가 결과를 확정한 후 1개월 내 완료하여야 한다.”의 규정은 동시에 폐지한다.  특별히 이를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8년 10월 15일 |  | **国家税务总局关于加快出口退税进度有关事项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8年第48号  　　为深入贯彻落实国务院关于加快出口退税进度的决定，现将有关事项公告如下：  　　一、优化出口退(免)税企业分类管理  　（一）调整出口企业管理类别评定标准：  　　1.将一类生产企业评定标准中的“上一年度的年末净资产大于上一年度该企业已办理的出口退税额(不含免抵税额)”调整为“上一年度的年末净资产大于上一年度该企业已办理的出口退税额（不含免抵税额）的60%”。  　　2.取消三类出口企业评定标准中“上一年度累计6个月以上未申报出口退（免）税（从事对外援助、对外承包、境外投资业务的，以及出口季节性商品或出口生产周期较长的大型设备的出口企业除外）”的评定条件。  　　（二）取消管理类别年度评定次数限制。出口企业相关情形发生变更并申请调整管理类别的，主管税务机关应按照有关规定及时开展评定工作。  　　（三）评定标准调整后，符合一类出口企业评定标准的生产企业，可按照规定提交相关资料申请变更其管理类别。税务机关应自受理企业资料之日起15个工作日内完成评定调整工作。  　　评定标准调整后，对符合二类出口企业评定标准的企业，税务机关应于15个工作日内完成评定调整工作。  　　二、全面推行无纸化退税申报  　　（一）实现无纸化退税申报地域全覆盖。各地税务机关应利用信息技术，实现申报、证明办理、核准、退库等出口退（免）税业务“网上办理”，切实方便出口企业办理退税，提高退税效率。2018年12月31日前，在全国推广实施无纸化退税申报。  　　（二）实现无纸化退税申报一类、二类出口企业全覆盖。按照企业自愿的原则，于2018年12月31日前，实现出口退（免）税管理类别为一类、二类的出口企业全面推行无纸化退税申报。  　　三、大力支持外贸新业态发展  　　（一）鼓励外贸综合服务企业为中小企业代办退税。各地税务机关要认真落实外贸综合服务企业退税管理相关规定，做好外贸综合服务企业和生产企业的备案、实地核查、代办退税发票开具、退税信息传递等工作，支持外贸新业态发展。  　　（二）指导外贸综合服务企业防范业务风险。主管税务机关要根据企业需求，指导外贸综合服务企业建立内部风险管控制度，建设内部风险管控信息系统，防范代办退税业务风险。  　　四、积极做好出口退（免）税服务  　　（一）各级税务机关应加强政策宣传辅导，通过新闻媒体、网站、短信平台、电子邮件、微信等多种途径开展政策宣讲和业务培训，便于出口企业及时收集单证，尽快满足退税申报条件。  　　（二）各级税务机关要定期提醒出口企业退（免）税申报、审核、退库进度及申报退（免）税期限等情况，便于出口企业及时、足额获取出口退税。  　　五、施行日期  　　本公告自发布之日起施行。《出口退(免)税企业分类管理办法》（国家税务总局公告2016年第46号发布）第五条第一项第3目、第六条第三项、第九条“出口企业管理类别评定工作每年进行1次，应于企业纳税信用级别评价结果确定后1个月内完成”的规定同时废止。  　　特此公告。    国家税务总局  2018年10月15日 |